

가족기업의 사전증여 규제완화 제언

A Study on the Deregulation of Family Businesses' Live-in Gift Taxes to Successor

윤병섭

Byung-Seop Yo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의 사전증여 규제완화를 제언해 증여중심 가업승계 방안을 모색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 사전증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이다. 첫째, 공제한도 증액과 사후관리 기간 단축이다. 공제한도 100억 원을 10년 이상 500억 원, 20년 이상 700억 원, 30년 이상 1,000억 원, 45년 이상 1,500억 원으로 하는 등 기업 영위기간 별로 공제한도를 증액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을 5년으로 단축한다. 둘째, 연부연납 기간 조정이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조정한다. 셋째,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이다. 현재, 사업업종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중분류로 되어 있는 업종제한을 폐지함이 맞다. 넷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사전관리요건 완화이다. 증여의 계속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으로 상속 7년(상증법 §18⑥)에 비해 길므로 이를 같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대주주 등 지분은 노노상속을 고려한다면 증여 지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상속 지분 5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4차산업혁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부응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규제 완화이다. 소수의 국가만이 세대생략할증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등으로 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하여 세대를 생략한 가업승계 등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제조세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완화하여야 한다. 세대생략에 관한 할증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가족기업, 사전증여, 규제완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세대생략할증과세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I. 서 론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경영권과 소유권이 분리되기보다 대개 경영자 1인에게 집중된 가족 기업이다. 중소기업 특성상 고유기술과 거래처의 인간관계가 경영자 1인에게 집중되어 승계를 앞둔 기업은 경영자가 고유기술을 전수할 수 있을 때 체화된 기술과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승계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족기업 비중이 큰 국가는 국가적으로나 개별기업으로 볼 때 가업승계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가업승계는 증여 또는 상속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후대 가족에게 동일 목적의 기업을 유지하게 이전하는 것이다. 먼저, 경영자가 생전에 소유권을 증여하고 경영권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경영자 사망 후에 상속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승계하는 방법이다. 끝으로, 경영자가 생전에 소유권 일부를 증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다가 경영자 사후에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상속이 어려울 경우 기업을 제3자에게 매각해 소유권과 경영권에서 손을 뗀다.

최근에는 경영자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으로 가업을 승계하기보다 증여를 희망한다. 본인이 일군 기술력을 후계자가 전수받으며 거래처와 원만한 관계로 수익을 창출하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원의 일자리 존속 및 창출을 경영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온전히 잇기를 바란다. 기업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사세를 확장하고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승계를 희망한다. 대를 이어 한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고용과 생산이 다음 세대로 잘 넘어가 전문성 지닌 축적된 개발기술이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증여를 통해 이루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일부 증여 후 상속이 48.2%, 사전증여(생전) 26.4%, 아직 결정하지 못함 18.1%, 사후상속 5.8% 순이다. 증여를 포함한 승계 계획(일부 증여 후 상속 포함) 70.6%가 사후상속 5.8% 보다 높아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가업승계 애로사항 중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78.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 2020.2.11.; 송병철 전문위원, 2020). 중소기업중앙회(2020)도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가 94.5%로 조사돼 승계 과정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의 주된 애로요인으로 그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증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의견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나 학계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보다 가업상속공제제도(심충진과 구자은, 2009; 이성봉, 2012; 홍승현과 오문성, 2019)에 초점을 맞춰 승계를 앞둔 경영자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한 바 없지 않다.

2008년 도입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비해 그 만큼 제도개선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 이로 인해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2020) 가업승계 실태조사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한도 확대 필요성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가 65.8%로 가장 높았으며, 과세

특례제도 상의 증여세 납부방법 개선 방향으로서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가 4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현행 세법 체계는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이 사전증여보다 조세를 절감할 수 있어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은 상속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역선택에 직면해 있다. 이 경우 경영자가 후계자 선정, 경영철학 교육 등 다방면에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의 사전증여 규제를 완화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증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사전증여에 대한 연구나 정책적 뒷받침이 상속 관련 제도보다 못미쳐 사전증여 관련 제도적 보완이 매우 중요함에 착안하여 가족기업의 사전증여 규제완화를 제언함으로써 사전증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II. 가족기업의 의의와 비중

1. 가족기업의 의의

가족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다. Shanker and Astrachan(1996)은 가족구성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가족의 관여 또는 참여 정도에 따라 광의, 중간, 협의로 가족기업의 개념을 나누었다. 이들은 협의의 가족기업 개념을 가족의 복수세대가 기업에 있으면서 일상업무를 직접하고 한 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경영책임을 질 때로 정의하고 있다. Handler(1989), Westhead and Cowling(1998) 등은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가족기업을 가족의 관련성(Carsrud, 1994), 상호의존적인 하위시스템(기업에 가족의 관련성)(Beckhard and Dyer, 1983; Davis, 1983), 가족 소유권(Barnes and Hershon, 1976; Lansberg, Perrow, Rogolsky, 1988; Donckels and Fröhlich, 1991), 가족에 의한 경영(Daily and Dollinger, 1992; 1993), 세대간 소유권 이전(Donnelley, 1964; Rosenblatt, de Mik, Anderson and Johnson, 1985; Churchill and Hatten, 1987; Ward, 1987; 2011; Handler, 1989), 복수상황(Cromie et al., 1995; Reynolds, 1995)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Westhead and Cowling(1998)은 4가지 유형의 가족기업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족기업의 소유권을 단일 지배가족이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가(ownership), 친·인척집단이 가족기업으로 인정하는가(perception), 단일 지배가족의 구성원에 의해 가족기업이 경영되고 있는가(management), 단일 지배가족이 보유한 가족기업의 소유권을 2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로 세대이전을 경험한 기업인가(ownership transition) 등이다. 하지만 위의 4가지 기준을 적당히 혼합한 복수상황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Howorth et al., 2002).

가족기업 정의를 좀 더 살펴보면 Tagiuri and Davis(1996)는 2명 이상 가족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며, 친족 참여 정도, 관리역할, 소유권에 의해 사업 방향이 영향을 받는 기업, Rosenblatt et al.(1985)는 2명 이상 가족구성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되 단일가족이 소유

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Ibrahim and Ellis(1994)는 단일가족이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한 사람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기업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Astrachan et al.(2002), Klein et al.(2005) 등은 F-PEC Scale, 즉 권한(power), 경험(experience), 문화(culture) 척도를 활용하여 가족기업 시스템을 이해하고 가족의 참여 범위와 방법에 초점을 두어 가족의 기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족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가족임을 밝혔다. 남영호(2008)는 F-PEC Scale을 활용하여 가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의 권한은 소유권을 가진 가족구성원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가족기업의 핵심 이슈는 소유권, 친인척 참여, 가족구성원의 경영, 세대 간의 소유권 이전 등이다.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는 대개 가족기업의 참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소유자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Claessens et al., 2000). 따라서 가족기업은 가족이 직접 소유권을 가지기도 하지만 계열사 상호출자를 통해 어느 정도 소유권을 확보하려 노력한다(McWilliams and Siegel, 2000; McWilliams et al., 2006; Miller et al., 2010). 즉, 소유권이 가족기업 구분의 중요한 기준이나 소유권 하나의 기준으로 가족기업 구분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최소한 2세대가 기업경영에 관여할 때를 전형적인 가족기업으로 보고 있으나, 경영자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가족기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남영호, 2005). 결국 가족기업은 소유권과 리더십을 다음 세대의 가족구성원에게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2. 가족기업의 비중

가족기업 비중을 볼 때 비중 44% 이상인 브라질, 일본, 독일, 스페인, 한국, 스웨덴, 대만 등의 국가는 대륙법을 따르며(Ellul et al., 2010), 가족기업 비중 24% 이하인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미국 등 국가는 영미법을 따른다. 미국은 전미기업 중 92%(광의)~18.3%(협의)이며(Shanker and Astrachan, 1996), 호주 75%(Owens, 1994), 이탈리아 93%, 스페인 75%(100대 기업의 17%)(Bellet et al., 1998), 영국 70%, 핀란드와 그리스가 80%, 스웨덴 79% 등이다(Tàpies and Ward, 2008). 1994~2000년 포춘(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의 37%(Villalonga and Amit, 2006), 1992~1999년 S&P 500 편입 403개사 중 약 35%인 141개사가 가족기업(Anderson and Reeb, 2003)이다. S&P(Standard Poor's) 500대 기업의 1/3(Lee, 2004) 정도가 대규모 가족기업이며, S&P 500 기업의 1/3, 프랑스 및 독일 250대 기업의 40%가 가족기업(Caspar et al., 2010)이다. 서유럽 13개국 상장사 5,232개사의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영미식 지배구조로 대표되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족지배 비중이 더 높다. 특히 EU경제를 이끄는 프랑스(64.8%), 독일(64.2%)을 비롯, 포르투갈(60.3%), 이탈리아(59.1%), 스페인(55.8%) 등의 비중이 50%를 넘는다(Faccio and Lang, 2002; 손훈정과 박규석, 2012)(<표 1> 참조). 한편, Grossmann and Strulik(2010)는 독일 제조업의 85%를 가족기업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학자들에 따라 가족기업 비중은 편차가 있다.

<표 1> 주요국 상장사들의 소유 주체별 비중

(단위: 개사, %)

구분	표본시점	기업수	법체계	분산소유	가족소유	국가소유	기타
아일랜드	1999	69	영미법	62.3	24.6	1.5	11.6
영국	1996	1,953	영미법	63.1	23.7	0.1	13.1
오스트리아	1999	99	대륙법	11.1	52.9	15.3	20.7
벨기에	1999	130	대륙법	20.0	51.5	2.3	26.2
핀란드	1999	129	대륙법	28.7	48.8	15.8	6.7
프랑스	1996	607	대륙법	14.0	64.8	5.1	16.1
독일	1996	704	대륙법	10.4	64.2	6.3	19.1
이탈리아	1996	208	대륙법	13.0	59.1	10.3	17.6
노르웨이	1998	155	대륙법	36.8	38.6	13.1	11.5
포르투갈	1997	87	대륙법	21.8	60.3	5.8	12.1
스페인	1997	632	대륙법	26.4	55.8	4.1	13.7
스웨덴	1998	245	대륙법	39.2	46.9	4.9	9.0
스위스	1996	214	대륙법	27.6	48.1	7.3	17.0
총계		5,232	대륙법	36.9	44.3	4.1	14.7

주) 가족소유는 의결권 20% 보유 기준.

자료: Faccio and Lang(2002)를 보완.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 가족기업 비중은 전체 제조업의 85.44%(박기동, 1981), 81.2%(사공일과 존스(1981)로 보고하였다. 남영호와 박근서(2008)는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70%가 가족기업임을 밝히고 있다. 박세열 외(2010)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한 유가증권과 코스닥 기업에서 2007~2009년 평균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제조업 494개사 조사 결과, 2006년 기준 73.7%가 가족기업임을 밝혔다.

III. 선행연구

1. 사전증여의 시기

Davis and Tagiuri(1989)는 부자 사이 관계가 라이프 주기에 따라 선형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0대 아버지는 17세~22세 아들과 업무관계가 비교적 좋지 않으나 50대 아버지는 23~33세 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60대 아버지는 34~40세 아들과 다시 악화되는 업무관계를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업무와 관련한 부자관계가 나이가 들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한다면 부자 사이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Dyck et al.(2002)은 승계프로세스를 연속성(sequence), 타이밍(timing), 바톤을 넘겨주는 기술(baton-passing technique) 및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라고 릴레이 경주에 비유하였다. 연속성은 경영자가 후계자에게 적절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훈

련하는 것이며, 타이밍은 리더십 이전을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톤을 넘겨주는 기술이란 경영자는 경영권과 소유권을 넘겨주고 후계자는 책임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상호 합의를 이루는 지혜이다. 경영자는 후계자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은퇴하는 두려움을, 후계자는 현 경영자로부터 경영권과 소유권을 승계받아 행사하면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대화로 끊임없이 소통해 갈등과 불협화음을 미리 해결하는 등 진정한 연대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경영자가 고령화되면 기업가정신을 발현하기 보다 현상유지를 하려는 마음으로 기울어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을 하기 어려워지기 일쑤다. 창의적 발상이 없어지고 과감한 투자활동이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기 어려워진다.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 활동이 부진해지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 승계 실패는 기업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경영, 암묵지 등 소중한 무형자산이 소멸되고 생산설비가 상실되며, 나아가 일자리도 없어져 국가경제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조병선과 조봉현, 2007).

가업승계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족기업이 소멸하면 기업을 경영하는 가족의 입장에 볼 때 가족 구성원은 일자리를 상실해 소득이 없어지고 가족의 생존 및 복지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족기업의 소멸이 고용을 저하시키고 국민 경제 활력과 역동성을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 강화에 역행한다. 따라서 적절한 사전증여 시기를 모색해 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사업승계를 통한 제 2창업이 신규창업보다 높은 생존율과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어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들은 사업승계 원활화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2). 사업승계를 창업과 동일한 수준에서 배려하고 지원함은 승계를 앞둔 우리나라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

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실제 세금을 내는 시점과 세금을 내는 과표 형성, 즉 경제적 활동 시기가 상이해 증여세로 인한 경제적 활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과세자료 확보가 어렵다. 증여세 과세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로 공개가 어렵고 일반 패널조사에서 자산이 많은 자의 샘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Joulfaian(2004)은 1933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에서 증여세율의 변화가 증여 규모에 큰 영향이 있음을 시계열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는 증여세 수입의 단기와 장기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단기 가격탄력성이 14정도로 장기 가격탄력성보다 상당히 높게 추정되었고 장기 가격탄력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증여세율의 변화가 생애 총증여의 규모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으나 증여 시기 선택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ernheim et al.(2004)은 미국 중앙은행(Federal Reserve: Fed)이 3년마다 발간하는 가계 재무보고서(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이용하여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상속세

공제한도의 증가가 사전증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속세 공제한도가 커질수록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어 상대적으로 증여금액이 줄어든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는 자산가를 자산규모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간 규모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의 증여는 줄었고 큰 규모의 자산을 가진 자산가의 증여는 늘어났으나 유의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김진(2009)은 증여세 과세체계의 조정(세율, 공제 등), 재산평가방법, 가업상속제도 등 증여세가 자산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증여세의 연도별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수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증여세수의 가격탄력성은 단기적으로 5.99, 장기적으로 1.38로 추정되어 단기 가격탄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Joulfaian(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증여세 과세체계의 조정, 즉 상대적 유효세율 조정이 증여 규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높은 증여세율과 역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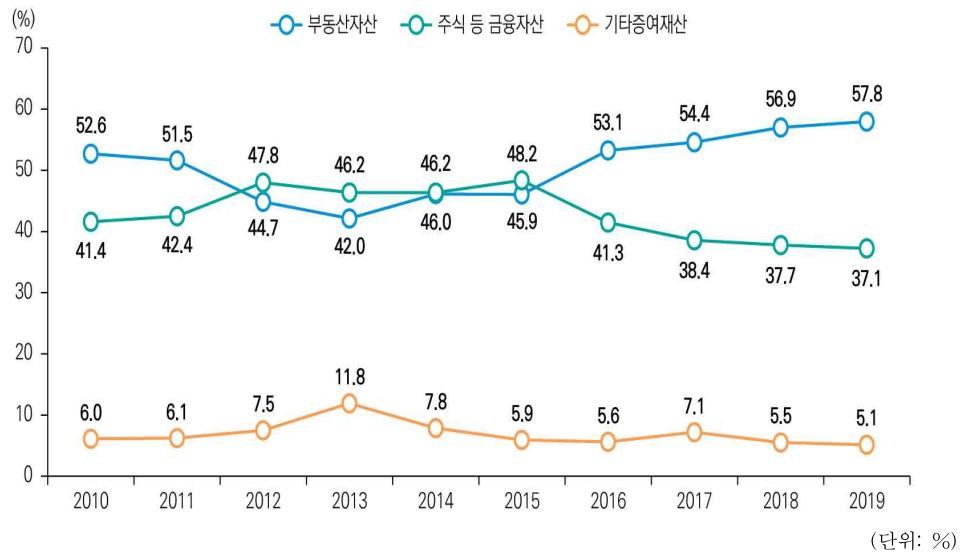
가업을 승계할 때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에 비해 증여세를 많이 부담해 승계 의지를 꺾고 불확실성을 높이므로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가업승계 지원세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 분할, 일감몰아주기 등 비조세비용 발생 가능성이 크다(윤태화 외, 2020). 가족기업이 많은 일본은 가업승계 어려움이 나타나자 2018년 특례조치를 시행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있다.

맥킨지(Mckinsey)는 2018년 한국 대주주의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그 누진세율을 고려하면 오토메게는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가 더 유리한 대안으로 부각된다고 분석하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증여세는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 탈루, 비과세와 감면제도 등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충분히 과세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조세제도와 징수기술의 발달로 소득세 과세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를 준다(송병철, 2020).

IV. 증여세 공제와 결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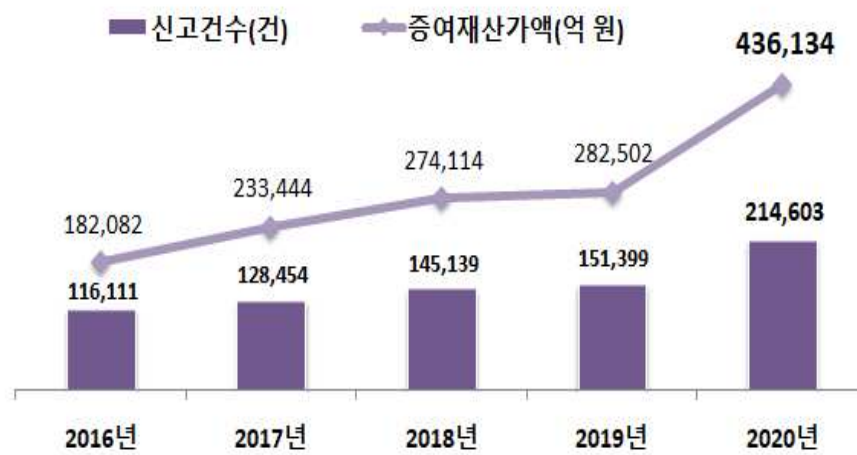
1. 한국의 자산종류별 증여재산 구성 변화

[그림 1]은 자산종류별 증여재산 구성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는 부동산자산, 주식 등 금융자산, 기타증여재산이 각각 52.6%, 41.4%, 6.0%의 비중을 보였으나 2019년에는 각각 57.8%, 37.1%, 5.1%의 비중을 보여 부동산자산 비중이 커지고, 기타증여재산 비중은 줄고 있다. 이는 개인 증여가 늘고 가업승계 증여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국세청(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2021).

[그림 1] 자산종류별 증여재산 구성비율



자료: 국세청(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2021).

[그림 2] 증여세 신고 건수 및 증여재산가액 현황

2020년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4,603건, 증여재산가액은 43조 6,1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하였다(국세청, 2021.6.29.)(<표 2>, <표 3>, [그림 2] 참조). 재산종류별로는 2020년 건물이 19조 8,696억 원으로 전년 8조 1,413억 원 대비 144.1%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가증권을 보면 2020년 198억 원으로 전년 144억 원 대비 37.4% 증가하여 정부 부동산정책에 기인한 건물 등 개인의 증여가 증가했고 기업승계를 위한 유가증권의 증여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표 3> 참조).

<표 2>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건수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증여재산
2020	214,603	57,312	71,691	19,829	60,303	18,455
2019	151,399	58,565	42,657	14,430	38,576	10,853
2018	145,139	55,040	41,681	14,062	38,295	8,938
2017	128,454	49,330	32,582	16,561	31,336	10,401

자료: 국세통계포털(2021a)(2021.10.3.검색.).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표 3>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증여재산
2020	43,613,387	7,861,409	19,869,612	5,880,038	6,990,007	3,012,322
2019	28,250,187	8,750,085	8,141,329	4,578,104	5,080,455	1,700,215
2018	27,411,429	8,527,265	8,339,942	4,169,431	5,208,454	1,166,337
2017	23,344,390	7,703,198	5,882,488	3,914,986	4,467,932	1,375,786

자료: 국세통계포털(2021a)(2021.10.3.검색.).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표 4> 2020년 자산 종류별 /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자산 별 증여재산가액 비중이 큰 규모는 토지 3억 이하 28.2%, 건물 10억 이하 36.4%, 유가증권 50억 초과 37.3%, 금융자산 3억 이하 29.8%, 기타 증여재산 10억 이하 26.2%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을 증여하는 가업승계의 경우 여타 자산에 비해 증여재산가액 규모가 클 수밖에 없으나 건수가 적다. 즉,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자산 종류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신고 금액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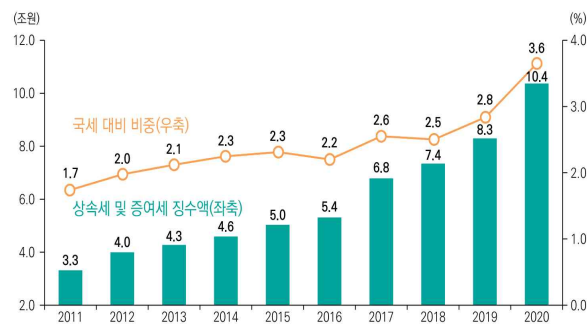
구분	합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증여재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214,603	43,613,387	57,312	7,861,409	71,691	19,869,612	19,829	5,880,038	60,303	6,990,007	18,455	3,012,322
1천만 이하	15,757	66,492	4,300	17,616	1,047	4,332	2,580	9,063	7,017	31,356	808	4,126
5천만 이하	34,023	888,556	10,833	251,735	5,236	134,885	4,458	102,186	11,888	311,308	2,992	68,442
1억 이하	57,251	3,923,747	17,791	1,113,113	17,409	1,165,733	3,943	256,670	16,314	1,142,281	4,655	245,950

3억 이하	62,933	9,401,391	16,212	2,214,286	24,073	3,813,520	4,688	646,047	16,820	2,083,099	5,426	644,439
5억 이하	17,292	5,908,944	3,670	1,131,908	8,552	2,991,215	1,196	379,986	3,809	992,686	1,684	413,149
10억 이하	20,069	11,772,791	3,315	1,666,257	11,650	7,235,490	1,885	1,078,766	2,996	1,004,224	1,910	788,054
20억 이하	5,291	5,209,830	811	703,454	2,964	3,123,533	636	625,675	951	439,653	571	317,546
30억 이하	953	1,569,247	150	247,120	443	745,160	158	297,625	200	174,656	137	104,687
50억 이하	483	1,144,554	81	169,558	175	420,810	110	289,151	107	179,613	71	85,822
50억 초과	551	3,747,433	59	346,362	82	234,965	155	2,194,870	191	631,130	111	340,107

2. 상속·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비교

1) 상속·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상속세는 사망(자연인의 사망)을 과세시기로 삼아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녀 등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다.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다. 2020년 상속·증여세 징수액(10.4조원)은 국세수입(285.5조원) 대비 3.6%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상속·증여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3.3조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10.4조원에 달하였다([그림 3] 참조).



자료: 국세청(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2021).

[그림 3] 상속·증여세 징수액과 국세 대비 비중 추이

2) 주요 세목별 세수 및 비중 추이

<표 5>는 [그림 3] 상속·증여세 징수액을 구분한 것이다. 2015년 상속·증여세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조원으로 <표 5>에서 상속세 1.9조 원, 증여세 3.1조 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총 세수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 상속세 0.9%, 증여세 1.4%이며, 2019년 상속세 1.0%, 증여세 1.7%로 세수 비중은 2% 정도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 2021).

<표 5> 주요 세목별 세수 및 비중 추이

(단위: 조 원, %)

구분	총 국세	세목별 세수 및 비중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15	217.2 (100)	1.9 (0.9)	3.1 (1.4)	62.4 (28.7)	45.0 (20.7)	54.2 (24.9)
2016	243.1 (100)	2.0 (0.8)	3.4 (1.4)	70.1 (28.8)	52.1 (21.4)	61.8 (25.4)
2017	266.2 (100)	2.3 (0.9)	4.4 (1.7)	76.8 (28.9)	59.2 (22.2)	67.1 (25.2)
2018	294.6 (100)	2.8 (1.0)	4.5 (1.5)	86.3 (29.3)	70.9 (24.1)	70.0 (23.8)
2019	303.4 (100)	3.2 (1.0)	5.2 (1.7)	89.1 (29.4)	72.2 (23.8)	70.8 (23.3)

주) ()안은 총 국세 대비 비중.

자료: 국세청(각 연도); 한국경영자총협회(2021).

우리나라 2019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세의 비율은 0.4%로 OECD 평균 0.1%(2018년 기준) 보다 0.3p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영국 0.2%, 독일 0.2%, 미국 0.1%보다 높고, 프랑스 0.6%보다 낮으며,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표 6> 참조).

<표 6> 명목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 국제비교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0.3	0.3	0.4	0.4	0.4
미국	0.1	0.1	0.1	0.1	0.1
영국	0.2	0.2	0.3	0.2	0.2
일본	0.4	0.4	0.4	0.4	0.4
프랑스	0.6	0.6	0.6	0.6	0.6
독일	0.2	0.2	0.2	0.2	0.2
OECD평균	0.1	0.1	0.1	0.1	-

자료: OECD(2020); 국회예산정책처(2021).

3. 증여세 결정 현황

<표 7>은 증여세 결정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건수와 결정인원이 혼재되어 있는 데 2010, 2011, 2015년은 결정인원이며, 그 외 기간, 즉 최근은 결정건수이다. 결정건수를 보면 2020년 183,499건으로 2016년 124,876건 대비 46.9% 증가하였으며, 2019년 대비 8.0% 증가하였다.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31조 원으로 2010년 13조 원 대비 10년 사이 2.4배 증가하였으며, 2016년 18조 원 대비 1.74배, 2019년 29조 원 대비 6.9% 증가하였다. 건당 증여재산가액을 보면 2020년 171백만 원, 2019년 17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표 7> 증여세 결정 현황(I)

(단위: 백만원)

귀속 년도	결정건수 또는 결정인원	증여재산 가액 ⁵ (a)	비과세 재산 가액 (b)	과세가액불산입액				채무 (d)	증여재산 가산액 ⁶ (e)	증여세 과세가액 (f=a-b-c-d+e)	증여재산공제			
				소계 (c)	공익법인 출연 재산가액	공익 신탁 재산 가액	장예인 증여 재산가 액				소계	배우자	직계 존비속 ⁷	그 밖의 친족
2020	183,499 ³	31,415,394	1,062	15,372	13,638	0	1,734	2,119,511	21,966,739	51,246,188	8,538,884	3,315,186	4,913,602	310,096
2019	169,911 ³	29,391,306	798	1,581	71	0	1,510	1,970,121	24,611,905	52,030,711	7,695,588	2,853,360	4,556,210	286,018
2018	160,421 ³	28,610,047	752	-569	-629	0	60	2,216,416	21,210,099	47,603,547	6,951,674	2,320,308	4,373,034	258,332
2017	146,337 ³	24,525,412	3,323	5,961	4,928	0	1,033	1,527,629	17,970,019	40,958,518	5,730,960	1,770,284	3,731,109	229,567
2016	124,876 ³	18,040,116	1,906	4,096	3,396	0	700	1,137,251	11,750,028	28,646,891	4,590,000	1,464,083	2,993,795	132,122
2015	101,136 ⁴	14,729,452	1,306	1,056	40	0	1,016	845,343	15,017,264	28,899,011	3,688,388	1,253,878	2,351,364	83,146
2014	105,533 ³	15,224,884	4,008	774	84	0	690	882,431		14,337,671	3,328,630	1,405,496	1,834,115	89,019
2013	109,644 ³	15,657,301	1,582	561	0	0	561	769,255		14,885,903	3,100,651	1,513,267	1,503,265	84,119
2012	91,331 ³	12,936,133	1,610	2,176	508	500	1,168	647,183		12,285,164	2,495,692	1,087,696	1,333,176	74,820
2011	126,409 ⁴	16,522,404	2,641	3,644	87	0	3,557	868,540	15,647,579	6,522,946	3,298,682	1,360,857	1,839,295	98,530
2010	96,623 ⁴	13,066,368	5,552					666,545		12,394,271	2,950,824	1,373,472	1,491,715	85,637

주 1) 해당연도 증여세 결정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2)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거소지)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거소지).

3) 결정건수.

4) 결정인원.

5) 증여재산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을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와 제30조의6).

6)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그 가액.

7) 직계존비속공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5억원)를 포함.

8) 징수유예, 영농자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이 포함되어 있음.

9)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 주식보유기준초과가산세, 공익법인무기장 가산세 등 포함.

자료: 국세통계포털(2021b)(2021.10.3.검색).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표 7> 증여세 결정 현황(Ⅱ)

(단위: 백만원)

귀속 년도	재해손 실 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등	과세표준	산출세액	징수유예 및 감면세액 ⁸	세액공제				신교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	총결정세액	재차증여 가산액 ⁶
						소계	납부세액	신고세액	외국납부 ⁹				
2020	1,428	2,500	42,703,375	12,661,066	51,067	7,380,807	7,231,327	149,403	78	153,457	249,957	5,632,606	
2019	653	-351	44,334,821	14,029,583	58,128	8,966,131	8,769,343	194,088	2,700	138,512	418,198	5,562,033	
2018	1,078	3,018	40,647,778	12,640,852	54,194	7,727,143	7,447,211	278,640	1,292	140,430	317,624	5,317,569	
2017	8,355	1,966	35,217,237	10,887,664	43,553	6,541,349	6,193,743	345,192	2,414	159,339	297,407	4,759,508	
2016	4,317	1,314	24,051,260	6,631,236	32,122	3,646,058	3,420,479	225,413	166	172,592	402,515	3,528,163	
2015	944	3,537	25,206,142	7,974,845	27,426	5,191,016	4,992,533	198,060	423	193,313	363,789	3,313,505	
2014	104	1,280	25,205,941	7,500,436	24,389	4,515,469	4,270,075	243,798	1,596	179,988	347,430	3,487,996	14,198,284
2013	187	684	20,391,015	5,536,700	21,840	2,262,812	2,038,675	223,029	1,108	327,249	550,276	4,129,573	8,606,634
2012	90	611	15,953,733	4,142,555	28,496	1,539,046	1,370,088	167,366	1,592	248,152	411,652	3,234,817	6,164,962
2011	320	1,957	18,869,566	4,696,587	29,484	1,671,615	1,442,100	227,776	1,739	222,267	348,934	3,566,689	
2010	85	2,395	17,873,240	4,943,980	26,236	2,387,548	2,200,527	186,582	439	201,537	261,912	2,993,645	8,432,273

주 1) 해당연도 증여세 결정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2)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거소지)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거소지).

3) 결정건수.

4) 결정인원.

5) 증여재산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을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와 제30조의6).

6)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그 가액.

7) 직계존비속공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5억원)를 포함.

8) 징수유예, 영농자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이 포함되어 있음.

9)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에는 보고서제출불성실가산세, 주식보유기준초과가산세, 공익법인무기장 가산세 등 포함.

자료: 국세통계포털(2021b)(2021.10.3.검색).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V. 사전증여중심 가업승계로의 전환: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증여가산과 공제, 세율 분석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수증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등에 따라 세액계산 방법이 다르다. <표 8>은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 8>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재산가액(본래의 증여재산, 증여의제 재산 등)(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비과세 재산 및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채무부담액(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내 재차증여가산액(증여받은 재산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
-	증여재산공제(인적공제,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증여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액(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30% 할증)
-	조특법상 면제세액 등(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문화재 등 징수유예 세액)
-	세액공제 등(기납부(증여)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결정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공익법인의 가산세(주식보유 한도초과, 무기장, 보고서 제출 불성실)
=	총결정세액
-	연부연납, 자진납부(분납) 세액
=	고지 증여세액

자료: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2021.7.26. 검색); 기획재정부(2020).

증여공제는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가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이다. 공제한도액을

보면,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직계존비속 외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등이다(상증세법 §53(증여재산 공제))(<표 9> 참조). 재해손실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것이다(상증세법 §55(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명의신탁은 신탁재산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합산배제(상증세법 §45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내지 §45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외)의 경우 증여재산에서 3천만원을 공제하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세액공제는 상증세법 §58(납부세액공제), 상증세법 §59(외국 납부세액 공제), 상증세법 §69(신고세액 공제) 등이다.

<표 9> 증여세 공제 변화

적용기간	합산기간	공제내용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90.1.1~'90.12.31.	5년간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91.1.1~'93.12.31.	5년간	1,500만원+ (결혼연수×1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94.1.1~'95.12.31.	5년간	3,000만원+ (결혼연수×300만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96.1.1~'96.12.31.	5년간	5,000만원+ (결혼연수×500만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97.1.1~'98.12.31.	5년간	5억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99.1.1~'02.12.31.	10년간	5억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03.1.1~'07.12.31.	10년간	3억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08.1.1~'13.12.31.	10년간	6억원	3,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500만원
'14.1.1~'15.12.31.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3,000만원	500만원
'16.1.1~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1,000만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자료: 상증세법 §53(증여재산 공제).

증여세율은 상증세법 §56(증여세 세율)에 의거 상증세법 §26(상속세 세율)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표 10> 참조). 우리나라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 단계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현재의 증여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10> 상속·증여세 세율 연혁(5단계)

(단위: 억 원, %)

1995.1.1.~1996.12.31.			1997.1.1.~1999.12.31.		2000.1.1.이후	
구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상속세	0.5 이하	10	1 이하	10	1 이하	10
	0.5~2.5	20	1~5	20	1~5	20
	2.5~5.5	30	5~10	30	5~10	30
	5.5 초과	40	10~50	40	10~30	40
증여세	0.2 이하	10	50 초과	45	30 초과	50
	0.2~1.5	20				
	1.5~3.0	30				
	3.0 초과	40				

주 1) 1996.12.31. 이전에는 상속·증여세를 달리 적용하였으나 1997.1.1.부터 상증세법 §56(증여세 세율)에 의거 상증세법 §26(상속세 세율)을 적용해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2) 상증세법 §27(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와 같은 세대생략 상속 및 증여시 30% 할증 과세(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 과세).

<표 11> 우리나라 증여세율 구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9천만원+	2억4천만원+	10억4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금액의 50%

주) 1997.1.1.부터 상증세법 §56(증여세 세율)에 의거 상증세법 §26(상속세 세율)을 적용. 즉, 증여세율이 상속세율과 같음.

자료: 상증세법 §26(상속세 세율) 및 §56(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세율은 증여재산에 따라 기본세율과 특례세율로 구분된다. 기본세율은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 세율구조이다(<표 10>, <표 11> 참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적용을 받는 창업자금(조특법 §30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승계 중소기업주식(조특법 §30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10%의 세율, 즉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한다. 상증세법 §27(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즉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상증세법 §26(상속세 세율)에 따른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증한다. 그러나 「민법」 §1001(대습상속)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

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세의 경감으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이 한 세대의 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지원에 멈춘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계층의 조세혜택으로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중소기업은 소유자와 경영자가 같고 대표이사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표이사가 사망해 급히 제3자로 대표이사가 변경된다면 기존 거래처와 거래 관계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사이 신뢰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하고 가업을 점차 승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는 질적 업무 속성에 대한 이해도 차이, 낮은 보수, 지속가능한 성장의 불확실성으로 장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그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만약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원활한 승계를 도와 가족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속성장에 기여한다면 감세효과가 부를 축적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반대주장이 있더라도 정책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현행 세법의 개정으로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여도 정당성과 당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업승계 세제지원이 원활한 승계를 도와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공제한도의 문제점과 증액

(1) 공제한도의 문제점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30억 원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변화가 없다가 2015년 1월 1일부터 1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표 12> 참조). 2008년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한도와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억 원으로 동일하였다(<표 13> 참조).

<표 12>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변천 과정

증여일	적용가액	공제한도	사후관리기간
'08.1.1.~'14.2.20.	특례대상 증여가액	30억원	10년
'14.2.21. 이후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제외	30억원	10년
'15.1.1. 이후	특례대상 증여가액에서 업무무관자산 제외	100억원	7년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10년 이상 2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30년 이상 가업

을 경영하면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도를 증액했다. 이에 비해 사전증여를 통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개정 없이 100억원의 한도에 머물러 있어 상대적으로 증여세 과세특례 공제한도가 작다(<표 13> 참조).

<표 13>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변천 과정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	공제한도
'07.12.31.이전 (1997년 도입)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가액	1억원(최초 도입)
'08.1.1.이후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중 큰 가액 ①가업상속재산의 20% ②2억원(미달시 그 가액)	30억원
'09.1.1.이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중 큰 가액 ①가업상속재산의 40% ②2억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14.1.1.이후	중소기업 졸업해도 매출 3,000억원까지는 공제 가능	가업상속재산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16.1.1.이후	공동상속 허용	상동	상동
'18.1.1.이후	상동	상동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2) 공제한도의 증액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기인하므로 상속 시점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증여는 증여자가 최적의 유리한 상황을 선택해 증여하는 시점을 정할 수 있다. 즉, 상속과 증여의 차이는 시점의 선택 통제 여부이다. 한편, 상속과 증여는 동일한 입법목적 을 지닌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사전증여를 통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공제액 한도에서 차이가 있다. 공제액 한도에서 양 제도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 사전증여 유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하게 한도액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2) 연부연납 및 증여세 납부 유예

(1) 연부연납 및 증여세 납부상의 문제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증세법 §71(연부연납)①). 연부연납의 기간은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이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증세법 §71(연부연납)②). 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이며,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상증세법 §71(연부연납)②; 상증세법시행령 §68(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③). 상속으로 가업을 승계받을 때 상속세의 가업상속공제는 일시 상속세 납부에 부담되는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장기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으나, 사전증여로 가업을 승계받을 때 장기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담으로 대폭적인 사전증여를 할 수 없다. 사전증여를 대폭할 경우 연부연납 기간이 짧아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조달이 어려워 사전증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표 15> 참조).

<표 15> 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단위: 백만 원)

귀속 년도	신고세액		분납세액 ³		연부연납세액 ⁴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20	214,603	6,852,792	21,173	1,105,026	7,232	1,740,045
2019	151,399	4,910,395	12,674	792,437	3,866	1,200,243
2018	145,139	4,468,521	12,509	737,651	4,108	1,360,827
2017	128,454	3,975,756	10,511	720,842	2,852	1,247,775
2016	116,111	2,723,579	8,090	503,278	2,168	555,780
2015	98,045	2,362,763	6,445	475,505	2,106	672,165
2014	88,972	1,878,801	5,519	393,355	1,992	377,454
2013	80,993	1,702,562	4,952	313,182	1,878	658,930
2012	77,789	1,639,184	5,042	325,964	1,716	627,455
2011	79,030	1,577,421	5,015	290,065	1,478	381,539
2010	79,908	1,341,183	5,055	268,746	1,322	239,476

주 1) 해당연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하고 작성.

2)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거소지)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거소지).

3) 해당연도 증여세 신고자 중 분납 신청분임.

4) 해당연도 연부연납을 허가한 실적임.

자료: 국세통계포털(2021c).

(2) 연부연납 및 증여세 납부 유예 개선방안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공제한도를 늘려 사전증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도 사전 증여 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증여세 납부시기를 늦춰주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동 제도의 활용은 무용지물이 된다. 즉, 증여 포기 가능성을 줄이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증여세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연부연납 또는 증여세 납부 유예를 검토해 가업승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제공하는 담보를 완화하고 연부연납의 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조정한다.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3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20년으로 조정한다.

다른 하나는 일본의 증여세제를 벤치마킹해 증여세의 일부를 상속할 때까지 납부유예하였다가 상속할 때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할 때 수증자에게 가업이 정상적으로 승계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증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추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사전관리요건 완화

(1)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사전관리요건의 문제점

<표 16>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정리한 것이다.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되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 한다.

<표 1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증여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비교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③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② 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증여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수증자	연령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가업종사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자	연령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주식보유기준	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증여물건	주식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증여

(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사전관리요건 완화

증여의 가업 영위기간이 10년으로 상속 7년(상증법 §18⑥)에 비해 계속 경영 기간 요건이 3년 더 길므로 이를 같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상속보다 계속 경영 기간 요건이 더 길다. 그리고 최대주주 등 지분은 상속은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 보유(상증령 §68③)하여야 하나 증여는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가산액이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다 규정과 연계할 수 있다.

4)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벌칙 강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납부의 이연 및 공제의 혜택은 중소기업을 원활히 승계하고 지속성장을 이루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대를 지닌다. 이 명분은 부의 대물림에 부응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분배기능에 역행한다는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배치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이 상속세와 맞물려 고용창출 및 유지라는 정책목적의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이 상속세와 맞물려 고용창출 및 유지라는 정책목적성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할 때 벌칙을 강화하며, 그 실행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는 사전증여가 상속세와 맞물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불식할 필요성 때문이다. 사전증여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회피할 수 없게 벌칙을 강화하여야 한다.

VI.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기업의 사전증여 규제완화를 제언해 증여중심 기업승계 방안을 모색하고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 사전증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먼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이다. 첫째, 공제한도 증액과 사후관리 기간 단축이다. 공제한도 100억 원을 10년 이상 500억 원, 20년 이상 700억 원, 30년 이상 1,000억 원, 45년 이상 1,500억 원으로 하는 등 기업 영위기간 별로 공제한도를 증액한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을 5년으로 단축한다. 둘째, 연부연납 기간 조정이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조정한다. 다만, 상속재산 중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3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20년으로 조정한다. 셋째, 업종변경 허용 범위 확대이다. 현재, 사업업종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중분류로 되어 있는 업종제한을 폐지함이 맞다. 넷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사전관리요건 완화이다. 증여의 계속 경영 기간 요건이 10년으로 상속 7년(상증법 §18⑥)에 비해 길므로 이를 같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대주주 등 지분은 노노상속을 고려한다면 증여 지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상속 지분 5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4차산업혁명과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부응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은 18세 이상 거주자인 상속인의 배우자도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는 수증자 연령이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로 규정해 거주자 자녀의 배우자 요건이 없으므로 거주자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증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증자의 대표이사 취임 요건은 삭제하거나 최소한 상속요건과 동일하게 2년 내 대표이사 취임으로 할 수 있다. 다섯째,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사후관리요건을 강화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혜택이 고용창출 및 유지라는 정책목적의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사후관리요건을 기업상속공제에 준하도록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규제 완화이다.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소수의 국가만이 세대생략할증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등으로 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도입해 적용한 세대생략할증과세 20%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강화되어, 1997년부터 할증률을 30%로 하였고, 2017년부터 미성년자(20억원 초과)에게는 할증률을 40%로 중과하도록 개정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였다. 직계 조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에만 가중과세가 되고, 방계조부모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뛰어도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기업상속공제 및 단기재상속공제 제도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인구의 초고령화로 인하여 세대를 생략한 기업승계 등이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제조세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완화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진(2009), 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09-10, 한국조세연구원.
- 남영호(2005), “가족기업의 승계계획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18(1), 57-78.
- 남영호(2008), “가족은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가: F-PEC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0(1), 15-41.
- 남영호·박근서(2008), 가족기업론, 서울: 청목출판사.
- 박기동(1981), 한국 가족기업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박세열·신현한·박경진(2010), “가족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적 특성이 기업 가치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25(2), 163-196.
- 사공일·L. P. Jones(1981), 경제개발과 정부 및 기업가의 역할: 한국 경제의 근대화 과정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손훈정·박규석(2012), 가족기업 장점 9 및 경영성과-Family-Owned Business 관련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2012 기업정책 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 송병철(2020), 권성동(대표발의)등 10명(2020.9.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45호) 검토보고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 심충진·구자은(2009), “중소기업 가업상속 조세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0(3), 9-39.
- 윤병섭·방시영(2013), “가족기업의 승계와 후계자의 어머니 역할: (주)리팩,” 중소기업연구, 35(2), 19-40.
- 윤태화·박종성·이영한(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중앙회 용역연구보고서, 한국경영학회.
- 이성봉(2012),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질서경제저널, 15(4), 47-62.
- 정혜윤·윤병섭(2022),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 방안,” 지역산업연구, 45(1), 57-92.
- 조병선·조봉현(2007),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 29(4), 237-264.
- 추문갑·윤병섭(2020), “후계자와 경영자 사이 4대 경영요인이 승계과정과 절차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정책연구, 봄호, 89-127.
- 홍승현·오문성(2019),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법제연구, 56, 143-167.
- 국세청(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2021.6.29.),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보도참고자료.
- 국세청(<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국세통계포털(2021b), “상속증여세_증여세 결정현황_증여세 결정 현황,” 국세통계.
 국세통계포털(2021c), “상속증여세_증여세 결정현황_증여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국세통계.
 국회예산정책처(2021), 2021 대한민국 조세.
 기획재정부(2020), 조세개요.
 산업통상자원부(2020.2.11.),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20),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2021),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선방안-가업승계시 Case Study 포함-.

税制調査會(2008), 平成21年度の税制改正に關する答申.

- Anderson, R. C. and D. M. Reeb(2003), “Founding-Family Ownership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S&P 500,” *Journal of Finance*, 58(3), 1301-1328.
- Astrachan, J. H., S. B. Klein, K. X. Smyrnios(2002), “The F-PEC Scale of Family Influence: A Proposal for Solving the Family Business Definition Problem,” *Family Business Review*, 15(1), 45-58.
- Barnes, L. B. and S. A. Hershon(1976), “Transferring Power in the Family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 54(4), 105-114.
- Bellet, W., D. Barbara, R. K. Z. Heck, P. Parady, J. Powell and N. B. Upton(1998), *Family Business as a Field of Study: Task Force of International Family Business Program Association*, The Cornell University Family Research Institute.
- Beckhard, R. and W. G. Dyer Jr.(1883), “Managing Continuity in the Family-Owned Business,” *Organizational Dynamics*, 12(1), 5-12.
- Bernheim, B. D., R. J. Lemke and J. K. Scholz(2004), “Do Estate and Gift Taxes Affect the Timing of Private Transf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12), 2617-2634.
- Carsrud, A. L.(1994), “Meanderings of a Resurrected Psychologist, or Lessons Learned in Creating a Family Business Program,”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1), 39-48.
- Davis, J. A. and R. Tagiuri(1989), “The Influence of Life Stage on Father-Son Work Relationships in Family Companies,” *Family Business Review*, 2(1), 47-74.
- Ellul, A., M. Pagano and F. Panunzi(2010), “Inheritance Law and Investment in Family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5), 2414-2450.

- European Commission(2002), *Final Report of the Expert Group on the Transfer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uropean Commission.
- Faccio, M. & L. H.P. Lang(2002), "The Ultimate Ownership of Western European Corporatio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65(3), 365-395.
- Grossmann, V. and H. Strulik(2010), "Should Continued Family Firms Face Lower Taxes than other Estat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1-2), 87-101.
- Lansberg, I. S., E. L. Perrow and S. Rogolsky(1988), "Family Business as an Emerging Field," *Family Business Review*, 2(1), 1-8.
- Lee, Jim(2004), "The Effects of Family Ownership and Management on Firm Performance," *SAM Advanced Management Journal*, 69(4), 46-53.
- McWilliams, A. and D. S. Siegel(200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Correlation or Misspecific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5), 603-609.
- Reynolds, P. D.(1995), *Family Firms in the Start Up Process: Preliminary Explor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1995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Family Business Program Association, 20-22 July, Nashville, TN.
- Rosenblatt, P. C., L. de Mik, R. M. Anderson and P. A. Johnson(1985), *The Family in Business: Understanding and Dealing with the Challenges Entrepreneurial Families Fa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hanker, M. C. and J. H. Astrachan(1996), "Myths and Realities: Family Businesses' Contribution to the US Economy-A Framework for Assessing Family Business Statistics," *Family Business Review*, 9(2), 107-123.
- Tagiuri, R. and J. A. Davis(1996), "Bivalent Attributes of the Family Firm," *Family Business Review*, 9(2), 199-208. doi: 10.1111/j.1741-6248.1996.00199.x.
- Tàpies J. and J. L. Ward(2008), *Family Values and Value Creation: The Fostering of Enduring Values Within Family-Owned Business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Villalonga, B. and R. Amit(2006), "How Do Family Ownership, Control and Management Affect Firm Valu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0(2), 385-417.
- Ward, J. L.(1987), *Keeping the Family Business Healthy: How to Plan for Continued Growth, Profitability, and Family Leadership*, San Francisco: CA., Jossey-Bass.

A Study on the Deregulation of Family Businesses' Live-in Gift Taxes to Successor

Byung-Seop Yoon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deregulation of family companies in advance to seek ways to succeed the gift-oriented family business, and to improve the gift tax taxation special system to suggest ways to revitalize pre-gifts. First, it is the expansion of the gift tax exemption system. First, the deduction limit is increased and the follow-up management period is shortened. The deduction limit of 10 billion won will be increased by family business period, with 50 billion won for more than 10 years, 70 billion won for more than 20 years, 100 billion won for more than 30 years, and 150 billion won for more than 45 years. The follow-up management period is shortened from seven years to five years. The second is the adjustment of the annual payment period. It is adjusted to 20 years from the date of permission for annual payment or 10 years from the date of permission for annual payment. Third, the scope of permission to change industries is expanded. Currently, business boundaries are collapsing. It is right to abolish the industry restriction, which is divided into middle categories. Fourth, it is to ease the preliminary management requirements of the gift tax exemption system. The requirement for the continuous management period of the gift is 10 years, which is longer than that of the 7 years of inheritance (1818) of the Inheritance Act), so it is necessary to do the same. Considering the inheritance of non-labor, the largest shareholder, etc., the requirement for continuous ownership of gift shares for more than 10 years should be defined as 5 years in the same way as the requirement for continuous ownership of inheritance shares for more than 5 years. Next is the deregulation of household surcharges.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the legislative exampl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are countries that apply surcharges on generational omission.

<Key Words> Family Enterprise, Pre-Gifts, Deregulation, Special Gift Tax System, Household Surcharge Tax